

# 채권법 6

- 채무자측: 종류채권의 특정 관련(제375조 2항),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(제461조), 변제공탁에 따른 채무 소멸(제487조)
- 제461조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.

-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.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.

- 채권자측: 채권자지체 발생(제400조), 자신의 채무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소멸(제536조)
-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사안
- 과일가게를 경영하는 A는 2013.3.8. 아침 10시에 B의 집으로 사과 1박스를 배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승낙함. 그런데 A가 10시에 도착해 보니 B는 집에 없었고, A는 B와 연락도 되지 않아 배달을 할 수 없었고, 사과를 다시 싣고 돌아오던 중 A의 경과실로 C와 충돌하여 사과는 모두 멸실되었다.
- A는 B의 부재로 인해 사과 배달이 좌절되고 이후 사과가 멸실되었으므로 B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고, B는 자신의 과실 없이 배달시간에 돌아오지 못한 것이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.

- 민사적 쟁점은?
- 멸실된 경우의 A B 사이의 법률관계(목적물 특정 후 멸실사안)
-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

- ①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채무
- ②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의 성부
- ③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:

- 제537조 (채무자위험부담주의)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예외는 제538조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.

- 금전채권
-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.
- 제397조 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의한다.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.
-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,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.

- 법정이율(민법에 정한 연5%, 상법에 정한 연 6%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)
- 예외: ① 법정이율 < 약정이율 -> 약정이율에 의한다. 다만, 약정이자는 지연배상의 기준